

시 정 질 문 서

【김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열정을 갖고 내일의 미래를 열어가는 송내1·2동, 심곡본동, 본1동 출신 김혜경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늘 한결같은 신뢰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를 살리고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일, 도시중심을 최고층 빌딩으로 리빌딩하는 일, 세계적인 각종 문화이벤트를 개최하는 일들이 부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건축물의 건축공종 중에서 기계설비공사는 냉·난방, 공기조화시스템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로서 공사금액 구성비가 대략적으로 아파트 15%, 일반건축물 20%, 인테리전트빌딩 30~40%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설비분야가 건축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설계와 시공이 전문화된 독립적인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됨에 따라 저가하도급 등으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가 미흡하여 부실공사와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인 설비 건설업체의 기술발전과 육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외국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94년 5월 16일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계설비 공사의 분리발주가 허용되었고 또한 2000년과 2001년에 국토해양부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관한 규정 중 예외 조항인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있는 공사에 해당되므로 기계설비 공사의 정밀시공과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가능한 타 공사와 분리 발주할 것을 각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07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제77조제1항제3호 ‘공사의 분리계약 금지조항에 관한 규정 중 예외조항’을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종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써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로 개정·시행하여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여건을 확대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계약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기계설비 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등 정부 공사는 물론 안산시, 화성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가평군 등 타 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분리 발주함으로써 그 효율성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분리발주의 장점과 타당성 즉, 공익의 극대화,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의 균등한 제공이라는 우수한 제도임에도 기계설비 공사에 대해 분리발주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발주에 따라 공사를 수주한 일반 종합 건설업체에서도 기계설비 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은 설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분리발주 규정을 개정할 취지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발주에 따른 저가하도급, 이중계약서 작성 강요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방지과 공사액의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축공사 발주 시 기계설비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질문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